# 자재 승인 규정 변경, 공사 현장 출입 자유로워야

## - 발주처 조직의 확대도 필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 step by step -

한미 간의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올해 들어 마스터 플랜이 최종 승인 단계에 이르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에 2008년까지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2011 12년 완료라는 발표는 뒤늦은 것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 미군기지 이전, 업계엔 '가뭄 속의 단비'

미군부대 영내에 시설물을 건립하는 공사는 발주처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미극동공병단(Far East District)과 소규모 유지 보수 위주의 미8군 계약처(Contracting Command Korea)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한미합동 방위력 증강 사업(CDIP)으로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현 국방부 시설본부)의 발주 공사도 미군부대 영내에 지어지는 공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FED 공사에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건설 공사 실적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2 3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FED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근에 신규 등록을 한 회사에게는 부대 이전사업이 연기됨으로써 기존의 입찰계획이 대부분 정지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다.

FED 발주 공사는 2000년대 초반에 연간 4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발주되었다. 입찰 참여방식은 지명(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사전에 PQ 심사를 거쳐 FED에 등록된 업체 중 공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명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기지이전 사업의 시작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에 계획되었던 신축 공사의 발주는 지연 또는 취소되고, 기존 건물의 유지 보수 공사 물량만이 소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전 적격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군 병력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기준을 미본토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건설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험이 없는 시공사가 미군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공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시공경험 및 시공평가가 국내 공사에 비해 서 상당한 부분의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7년 3월 20일,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그동안에 지루한 기다림의 터널에서 서광이 비추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FED 등록의 문턱에서 탈락했던 시공업체들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이며, 다시 한 번 느슨했던 마음을 되잡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FED 공사의 특이성

FED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극동공병단을 지칭하는 약어이다. 미공병단(US Corps of Engineer)은 환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POD(Pacific Ocean Division)를 두고 그 산하에 Honolulu District, Alaska District, Far East District, Japan District의 4개 지부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정부조달법」(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준용하며, 기술적으로는 미본토의 규정인 ASTM, NEC, NEFA 등 국내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매우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소방 규정이 있는데, FED 발주 공사에서 그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규정에 따라 자재 선정 및 시공을 해야 하며, 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적법한 자격증을 소지한(NICET) 자의 확인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낯선 규정들은 자재의 승인에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서 총 공사 부기 금액의 30% 이상 되는 금액을 수입자재에 할당할 수밖에 없다. 시방서상에 미국의 규정

에따라생산되고검사를 마친건축자재가 국내에 얼마나 있겠는가? 실제로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국산자재가 훨씬뛰어나다해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 자재에 의존해야하는것이현실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US Flag Vessel Carrier Only 조항이다. 미국과 한국을오가는선박회사는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의 회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 국적의 선박을꼭이용해야한다는조항때문에시공상 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자재가 있어도 비싼 운임을주고시간을허비해가며미국국적의선박을이용해야만한다.

위에간단한예를몇가지들기는했지만 이러한 특이성들이 공사를 처음 접해보는 시공사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될 것이다. 그리고국내공사처럼숙달된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일을진행시키는방법도계약서상 55% 이상직영공사를해야하는조항이있으므로만만치가않다.

## 패스트 트랙, 공기 단축의 대안이 될 듯

프로젝트의 발주와 동시에 지명을 통지받은업체들은 CD로도면과시방을수령하고 이것을 출력하여 담당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것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투찰을하게된다. 일반적으로한달여 가량의입찰준비 기간이주어지며,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낙찰업체선정이이루어지지않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전에 100% 디자인이 완성되고,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까? 디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ED 공사에서다년간시공경험을가진 시공사의 경우는 Standard - Desig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컨셉만 주어지면 능히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을것이라판단된다.

## 자재 승인 규정 변경 필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제품의 성능과 관계없이 미국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수입되는 자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양국간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의해 FED 공사에 쓰이는수입자재들은 한국의세관에서세금면제를받는다. 면제를받기위해서는FED가 승인하는또다른서류가필요하며, 자재승인및면세서류승인을받기위해서는각각 최대15일의기간이소요된다.

미군시설물의가장큰목표가미국본토의 것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할지라도 규정을변경하게되면 자재수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해서발생하는공정상의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시설물의노후에따른유지보수시에도더욱 효과적인대응을할수있을것이다.

## 新기지, 자유로운현장 출입 보장되어야

미군 부대뿐만 아니라 한국군 부대 안의 공사라할지라도군부대라는특수성때문에 공사 현장까지의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몇 개 되지 않는지금의시점에서도부대출입을위해길게늘어서있는공사관련차량을어렵지않게볼수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이전 마스터플랜의 발표에서처럼 2011 12년까지 500개의시설물을완성해야한다면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평택의 Camp Humphrey 영내는 지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하여도최소한새로매입한349만평의 지역에서이루어지는공사에한해서는자유로운출입이보장되어야만할것이다.

## 발주처 조직 확대도 필요

미군부대이전사업은그규모면에서국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FED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운영하고있으며, 자재하나하나에서부터준공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를 관리하고있다.

이전부지조성공사가끝난후본격적으로공사 발주를 시작하는시점을2008년이라고 가정하고 2012년까지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것으로보면6년동안 500개의시설물을완성해야 한다는결론이나온다. 부대 이전 사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준공 전 프로젝트와 신규 프로젝트가 맞물려서 더욱 더 많은 공사의 관리를 해야 할 수밖에없다.

물론 금년 5월에 선정하게 될 PMC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FED의 기본조직의 역할에과도한업무가예상되므로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할것이다.

## Step by Step 진행이시작이자 끝

필자가 처음으로 FED 분야에 몸담게 되었을때그방대한서류에놀랐던것이생각난다. FED 공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Step by Step으로진행되는것이시작이자 끝이다. 어떻게보면성격급한한국사람들에게는힘든부분이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10조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미군 부대 관련공사에서는천문학적인금액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에 지루하게 끌었던 이전 사업이 이제야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서필자는데드라인을두고밀어붙이기식의 진행보다는 FED 공사의 기본인 Step by Step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싶다.

신지수
범양건영과장